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10

January 10, 2023

2022년 하반기 주요 공정거래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2022년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10.)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0. 21.	• (이슈) 하도급법상 기술유평행위 신고 포상금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유평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및 TV 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10. 24.	• (이슈) 온라인쇼핑몰 및 TV 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자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온라인쇼핑몰 및 TV 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11. 10.	• (이슈)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마련 - 10. 7.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1. 15.	• (이슈)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3. 1. 12.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슈	주요 내용
<u>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u> 11. 16.	• (이슈)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과태료 가중처분의 해석방법을 규정한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을 마련
<u>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u> 11. 24.	• (이슈)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년 추진한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성과 보고
<u>공정위, 표시 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u> 11. 30.	• (이슈)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종전 통합공고 이후 신설·변경된 25개 법률 및 28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
<u>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u> 12. 1.	• (이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시장감시국에 신설
<u>공정위, 2022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u> 12. 2.	• (이슈)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
<u>공정위,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u> 12. 6.	• (이슈)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개최
<u>공정위,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u> 12. 9.	• (이슈)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 • (주요내용)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2. 12. 9. 시행함 - 10. 21.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u>공정위,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 개최</u> 12. 12.	• (이슈) 공정위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 • (주요내용) 공정위는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u>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u> 12. 13.	• (이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 (주요내용)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이슈	주요 내용
<u>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u> 12. 14.	• (이슈)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
<u>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시행</u> 12. 19.	• (이슈)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2022. 12. 30. 부터 시행
<u>공정위,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u> 12. 20.	• (이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 (주요내용)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
<u>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u> 12. 20.	• (이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내용)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u>공정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u> 12. 23.	• (이슈)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공포
<u>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u> 12. 27.	• (이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
<u>공정위, 202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u> 12. 27.	• (이슈) 202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 (주요내용) 공정위는 6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521개 회사의 2021. 5. 1. ~ 2022. 4. 30. 기간 중 (i)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ii)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iii)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을 공개하였고, 특히 (iv) 지배구조 모범 운영 사례 등 새로운 항목도 공개
<u>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u> 12. 28.	• (이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2. 12. 28. 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20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29.	• (이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12. 29.	• (이슈)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자진시정 방안 제출제도 도입이 포함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12. 29.	• (이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발표
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 및 시행 12. 30.	• (이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
II. 주요 소식	
대법원, 통행세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10. 24.	• (이슈)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주요내용) 대법원은 원재료 공급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하여 공급받도록 하여 해당 업체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다크패턴 대응 관련 세미나 공동주최 11. 11.	• (이슈) 다크패턴 대응 관련 세미나 •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022. 11. 11. ‘다크패턴, 국제적 논의와 소비자보호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공정위 리니언시제도 활용 건수 급감 11. 28.	• (이슈) 리니언시 제도 활용 감소 • (주요내용)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음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12. 8.	• (이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 (주요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2.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이루어짐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12. 18.	• (이슈)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2. 21.	• (이슈) 2023년 경제정책방향 • (주요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2023. 1. 제정 예정 12. 23.	• (이슈)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3. 1. 중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
공정위,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마련 12. 29.	• (이슈) 플랫폼 시장 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

III. 국회 발의법안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이용선 의원안) 국회제출 10. 17.	• (이슈)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용선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각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안철수 의원안) 국회제출 10. 25.	• (이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외통위 소속 안철수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오기형 의원안) 국회제출 11. 2.	• (이슈)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안을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안) 국회제출 11. 8.	• (이슈)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국방위 소속 배진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류호정 의원안) 국회제출</u> 11. 9.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문체위 소속 류호정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김종민 의원안) 국회제출</u> 11. 11.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안) 국회제출</u> 11. 11.	• (이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김희곤 의원안) 국회제출</u> 11. 15.	• (이슈)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윤두현 의원안) 국회제출</u> 11. 18.	• (이슈) 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윤두현 의원은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윤두현 의원안) 국회제출</u> 11. 18.	• (이슈)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윤두현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윤두현 의원안) 국회제출</u> 11. 18.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윤두현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u> 11. 18.	• (이슈) 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문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김성원 의원안) 국회제출</u> 11. 18.	• (이슈)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유의동 의원안) 국회제출 11. 21.	• (이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유의동 의원안) 국회제출 11. 21.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유의동 의원안) 국회제출 11. 21.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 같은 취지의 약관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도 발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양정숙 의원안) 국회제출 12. 2.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송석준 의원안) 국회제출 12. 5.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송석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백혜련 의원안) 국회제출 12. 12.	• (이슈)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백혜련 의원은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김한규 의원안) 국회제출 12. 15.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윤창현 의원안) 국회제출 12. 21.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10)

I. 보도자료

1.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마련 (10. 21.)

-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 **(주요 내용)**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5%인 현행 신고포상금 범위를 과징금의 최대 20%까지로 상향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및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로 상향함(시정명령의 경우 200만 원, 경고의 경우 100만 원)
-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라도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
- 향후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및 TV 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10. 24.)

- 공정위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자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영간섭 금지조항 신설)**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
 - **(판촉비용의 부담비율 기준 명확화)** 판촉행사 시행이전 사전약정시 뿐만 아니라, 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부담비율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
 - **(TV홈쇼핑의 청약철회제한 관련 상품의 교환·환불 및 반품으로 인한 비용의 일방적 전가 금지조항 신설)** 납품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TV홈쇼핑사가 소비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교환·환불 및 반품을 허용하였고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등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함
 -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시 상품대금 지급기한 개정)** 직매입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11. 10.) -

10. 7.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을 개정하여 시행. 본 해석지침은 개정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CVC 소유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
 - CVC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을 구체화함

- 공정거래법 제20조 제3항 제4호 다목(자금조달), 제5호 나목(투자제한) 및 제6호(매각금지)의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규정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
- 외부출자제한, 해외투자제한 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금액을 구체화
-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시점 명시
- 완화된 의무지분율이 적용되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관련 예시 제공

4.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1. 15.)

- 원사업자의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2023. 1. 12. 시행 예정)
 -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함. 이에 따라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을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하고, 계약건수 및 연동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함
 -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의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함. 이에 따라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위 대금 인상실적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하고,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 및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의 기준을 구체화함
 - **(벌점 추가 감경사유 구체화)**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그 밖의 조치를 고려하여 벌점을 최대 1점까지 추가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연동계약 권장 근거 마련)**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함

5.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1. 16.)

- 공정위는 소관법률 8개에서 정한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하 “**가중처분지침**”)’ 제정안을 마련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마련)**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 순서를 3단계로 구체화함. 과태료 가중처분은 (i) 우선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ii) 그러한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 적용됨. 다음으로 (iii) 적발된 위반행위 발생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3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를 검토하여 부과처분의 차수를 결정
 - **(위반행위 적발 시점 명료화)**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 적발일은 (i) 직권 조사 개시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조사(현장조사)를 최초로 한 날이고, (ii) 신고에 따른 조사 개시의 경우 신고 접수일을 의미

6. 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11. 24.)

- 공정위는 2022년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성과를 보고
- 이에 따라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후생 증가**

- **(카셰어링·렌터카)**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임
- **(보험·신용카드)**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될 예정임
- **(수소산업)**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임
- **(알뜰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일몰기간이 2022. 9. 만료되었으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하기로 함

- **창업촉진 및 재창업 유도**

-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 현행 레크레이션 시설(탁구장 등) 2종 보유 의무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썰매장 설치·운영 시 부지면적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현행법은 등록요건으로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유오피스를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관광산업)** 현행법은 파산 시 2년간 재창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복권 시 즉시 재창업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임
- **(공중위생업)** 현행법은 영업시설 자진 철거에 따른 폐쇄명령 후 1년간 재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사업자 부담 완화**

- **(LNG 추진선)** 차량을 이용하여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2대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를 4대로 완화하기로 함
- **(자격사)** 내년부터 전문자격사(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의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공공조달 제도 개선**

- **(공공기관 단체급식)** 8개 공공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함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7. 공정위, 표시 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11. 30.)

- 공정위는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2020. 6. 17.) 이후 신설·변경된 25개 법률 및 28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86개 법률에 따른 127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함
- 공정위는 위생용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 제정되고,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23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하였다고 설명

8.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12. 1.)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해 임시조직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확대·개편한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시장감시국에 신설

-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운영기간은 1년이며, 정원은 총 7명임
- 신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에서 수행하던 업무(플랫폼 분야 민간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실시)뿐만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와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수행할 예정

9. 공정위, 2022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12. 2.)

- 공정위는 2022. 5. 기준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2021. 1. 1. 부터 2021. 12. 31. 기간 중 (i) 집단별·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ii)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iii) 상표권거래 현황과 더불어 (iv)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v) 공익법인과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공개함
 - **(집단별·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금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였고, 총수 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유지됨
 -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4%p 감소함(12.1%→9.7%)
 - **(상표권거래 현황)** 상표권 사용 유상거래 집단(46개 집단→52개 집단)과 거래규모(1.35조 원→1.52조 원)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함
 - **(물류·IT서비스 분야 현황)** 타 산업과 비교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내부거래 물량 중 대부분이 수익계약으로 이루어짐
 -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확인됨

10. 공정위,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12. 6.)

- 공정위는 2022. 12. 6.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던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 발표회를 개최함
- 연구용역 수행자인 이화령 박사(KDI)는 해외 경쟁당국의 시장분석 보고서,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들을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 **(해외 당국의 앱마켓 시장현황 분석)**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규율의 필요성을 제언함
-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미국의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AICOA), 오픈 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 OAMA)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인앱결제 관련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막는 앱마켓 정책 등이 다루어짐
-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앱마켓 시장은 근본적으로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하여 해외 경쟁당국들은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사전적 규율은 입법에 따라 그 내용 및 방식이 다양하므로 향후 진행경과 및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 (12. 9.) - 10. 21.자 뉴스레터

-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2. 12. 9. 시행
 - **(안전지대 판단기준)**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객관적인 거래총액인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하고,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

만 기준을 유지함

* 해당 연도에 지원주체/지원객체 간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

-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i)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인면서, (ii)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고,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i)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인면서, (ii)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함
- **(부당성 안전지대 확대)** 변경된 기준으로 인하여 안전지대가 좁아질 우려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여 대규모로 거래하여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이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에 포함되도록 함

* 지원금액 1억 원 미만인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경미한 경우

12. 공정위,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 개최 (12. 12.)

- 공정위는 2022. 12. 12.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와 ‘조사·심의절차 개선방안’ 및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에 관해 논의함. 공정위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심의절차 개선방안)** 공정위는 (i) 조사공문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ii) 조사진행 단계에서 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심의 이전 공식적인 의견 제출 절차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iii) 심의·의결 단계에서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공정위는 (i)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구체화하고, (ii)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정비하며, (iii) 사건처리기간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함

13.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13.)

-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금조정 실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하도급대금 수준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인하되었다는 응답이 많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수급사업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구두로 요구 받은 경우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하도급 계약서 교부 현황)**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함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 운영 확산 및 법제화를 통한 연동 관행 정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14.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2. 14.)

-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유구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이하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을 24.5%로 전년 대비 감소함
 - **(출자현황)** 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일반집단보다 적어,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내부거래)**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수익구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15.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시행 (12.19.)

-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 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2022. 12. 30.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간이심사 절차 적용 범위 확대)** (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ii)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 (iii)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열거된 유형 이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규정을 추가하였음
 -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정비)**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을 고려요소로 규정하고, 참고사례를 추가하여 국내 영향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을 정비하였음
 -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일본,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비수평결합 안전지대를 보완하여 당사회사의 각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경우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확대)** (i) 기존 간이심사 대상이었던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 설립, (i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후 추가 출자, (iii)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되는 임원겸임을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하였고,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회신받은 후 사실관계·시장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없이 정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정위는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

16.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12. 20.)

-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함
-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2. 2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7일 공포·시행됨
-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됨

- 또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할 예정임

17.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 20.)

- 친족 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 20. 국무회의를 통과함
-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
-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 → 3%)하였음

18. 공정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12. 23.)

- 공정위는 2022. 12. 23.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을 개정·공포함
- 2023. 1. 1. 이후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에 대하여 2024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됨
-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의 지원, 법률 규정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적용 등을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벌점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요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운영하는 경우 최대 5점 가점 부여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 항목 신설
 - 현금성결제비율 평가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평가 배점 조정
 - 산업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적용 업종을 기존 제조·건설분야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
 -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화

19.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12. 27.)

- 최근 심사 난이도가 높고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가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결합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을 전담하는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밝힘
- 국제기업결합과는 과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인원은 공정위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충원함
- 공정위는 이번 심사인력 확충으로 글로벌 기업결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품질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 공정위, 202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2. 27.)

- 공정위는 6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521개 회사의 2021. 5. 1. ~ 2022. 4. 30. 기간 중 (i)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

황, (ii)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iii)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을 공개하였고, 특히 (iv) 지배구조 모범 운영 사례 등 새로운 항목도 공개하였음

- 신규 지정집단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집단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서면·전자투표제 활용은 개선된 반면 집중투표제 운영은 위축되었다고 분석함
- 공정위는 2021년에 비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거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향후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을 밝힘
- 한편,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도입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1.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12. 28.)

-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으며, 2022. 12. 28.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확대함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서비스장애로 인한 해지 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확대함
 - **(자동차)**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 보증기간을 신설함
 -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문화하고,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함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이용 기간이 아닌 이용 횟수로 계약하는 경우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함
 - **(골프장)** 2022. 12. 9. 개정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기준 개정

22. 공정위, 20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29.)

- 공정위는 2022년 처음으로 18개 업종 전부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함
 - **(만족도 등)** 대리점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공정위 정책 만족도, 신규 도입제도 인지도의 수준이 대부분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로 나타남
 -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불공정거래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밖에도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음
 - **(재판매가격유지 경험)**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14.3%이나 업종별로 편차가 컸음. 특히,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 화장품업종(55.0%)의 응답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남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23.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12. 29.)

- 공정위는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이 포함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함
 - **(신고면제대상 확대 추진)** 계열회사간 합병 및 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총수의 1/3미만 임원 겸임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자진신고방안 제출제도)** 기업이 유효적절한 경쟁제한성 해소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할 예정
- 공정위는 위와 같은 개편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24.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12. 29.)

- 공정위는 18개 업종의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발표함
 - **(공통 사항)**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의무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상이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조선임가공업)**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 작업별 투입인원, 작업시간 등 기재항목을 추가함
 - **(골판지 가공업·파스너 제조업)** 원사업자의 제품 수령·검사지연, 부당 대금 감액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정함
 - **(건설업종)** 인지세액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하여 기재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 **(용역업종)**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5. 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 및 시행 (12. 30.)

-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에서 (i)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공통으로 법위반 사업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자발적 피해 구제 유도를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도록 정하였고, (ii)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상한액은 최대 20억, 중대한 위반행위의 상한액은 최대 9억으로 상향하였으며(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iii)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하여 정합성을 제고하였음(대리점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2022. 12. 28. 부터, 하도급 분야는 2023. 1. 12. 부터 시행

II. 주요 소식

1. 대법원, 부당지원행위 등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10. 24.)

- 대법원은 모그룹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 원재료 공급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하여 공급받도록 하여 해당 업체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1심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나,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배임으로만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다시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또한, 제3자에 대한 공급중단 요구, 보복출점 등을 통해 제3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2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할 정도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다크패턴 대응 관련 세미나 공동주최 (11. 11)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022. 11. 11. '다크패턴, 국제적 논의와 소비자보호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 총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음
 - **(제1주제)** '국제기구 다크패턴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제2주제)** '독일 및 EU의 다크패턴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제3주제)** '미국 및 호주의 다크패턴 논의 동향과 시사점'
- 특히, 제3주제 발표자인 유영국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거래에서의 상술은 오프라인과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기존 규범 외에 특별한 규제 근거가 필요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공정위 리니언시제도 활용 건수 급감 (11. 28.)

-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음
- 글로벌 경쟁법 전문지널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에 의하면 공정위에 접수된 리니언시 건수는 2018년 137건, 2019년 94건, 2020년 30건, 2021년 26건으로 집계되었음
- 공정위 관계자는 위 통계가 복수의 대형 로펌이 수임받은 사건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19 확산으로 담합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리니언시 활용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음
- 다만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창구 이원화'로 리니언시를 통해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하여 활용 건수가 감소했다는 비판이 있음

4.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12. 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2.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이루어짐

-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i)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 위탁 시 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하며, (ii)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됨
-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로 계약의 사적자치 원칙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제기됨

5. 공정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12. 18.)

-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 하였음
-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ii)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iii)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음
-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행위를 방지하고, 위약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관련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한다고 밝힘

6.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2. 21.)

- 정부는 12. 21.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 및 부담경감', '공정시장 구현' 등 공정거래 정책 관련 방침을 밝힘
- **(기업공시제도 개편)** 현행 제도 하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거래는 공시 대상이고, (i) 과도한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함. 또한, (ii) 중복되고 빈번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복 항목을 통합하고 연 1회 공시주기로 완화함
- **(기업결합심사 개선)** M&A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재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결정하고 있으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성이 적은 M&A에 대한 신고면제를 확대함
- **(부담금 개선)**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부담금 부과기준 변경 등 부담금 제도를 개선함
- **(수수료 경감)** 면세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하여 특허수수료 경감 조치 연장을 검토함
-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i)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0억 원보다 상향하고, (ii) 관련 심사지침 개정을 통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iii) 입찰담합 협의회 소속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공공분야 입찰담합 및 담합 관여행위를 조기에 포착·방지함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상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플랫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제·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임
- **(기타 신산업)** 소비자의 동의 없는 구독서비스 자동갱신·결제 등 전자상거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유형별 규율방안을 2023. 6.에 마련할 예정임

7.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2023. 1. 제정 (12. 23.)

- 공정위는 2023. 1.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본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멀티호밍 제한,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규율할 예정임
- 또한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기존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전환

8. 공정위,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마련 (12. 30.)

- 공정위는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함
- 정부는 ‘갈등조정 전문위원회’,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업계 간 갈등 조정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예정임

III. 국회 발의법안

1.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이용선 의원안) 국회제출 (10. 17.)

- 산자중기위 소속 이용선 의원은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에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여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안철수 의원안) 국회제출 (10. 25.)

- 외통위 소속 안철수 의원은 (i)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2 신설)하고, (ii) 공정위의 상임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안 제57조 및 제61조)하며, (iii)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를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65조)하고, (iv)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안 제68조)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오기형 의원안) 국회제출 (11. 2.)

-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2022. 11. 2. 대표 발의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기준 제시(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 5천억 원 이상,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 원 이상), (ii)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 도입을 의무화, (iii)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iv)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v) 위반금액의 2

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하고,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4.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안) 국회제출 (11. 8.)

- 국회 국방위 소속 배진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i)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ii)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부당한 기업인수합병 금지(안 제7조제1항), (iii) 시장지배적 플랫폼 임직원 또는 지배권을 가진 자의 직무겸임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 금지(안 제9조), (iv)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안 제10조), (v) 손해배상책임의 규정(안 제14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

5. 하도급법 일부개정안(류호정 의원안) 국회제출 (11. 9.)

- 국회 문체위 소속 류호정 의원은 공정위로 하여금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 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가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안 제3조의6, 제13조 제9항 신설 및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등)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6. 하도급법 일부개정안(김종민 의원안) 국회제출 (11. 11.)

-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술유용에 한하여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마련하는 내용(안 제35조, 제35조의6 신설)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안) 국회제출 (11. 11.)

-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i)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안 제6조), (i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ii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iv)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v)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vi)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vi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등을 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8. 하도급법 일부개정안(김희곤 의원안) 국회제출 (11. 15.)

-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금 조정에 관한 대행 협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16조의2 제2항)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9.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윤두현 의원안) 국회제출 (11. 18.)

-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윤두현 의원은 총매출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업종의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이 위반기간 이후에 발생함에 따라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과징금이 과소하게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아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9조)을 신설하는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0.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윤두현 의원안) 국회제출 (11. 18.)

-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윤두현 의원은 전자상거래 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허위 및 악성 후기에 대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에서 대가를 받고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통신판매중개회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20조의4 등)을 신설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1.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윤두현 의원안) 국회제출 (11. 18.)

-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윤두현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동시에 교부하는 실무상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서 교부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11조 제1항)을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2.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 (11. 18.)

- 국회 문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가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고 영세한 납품업자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두는 규정(안 제8조)을 신설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3.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김성원 의원안) 국회제출 (11. 18.)

-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납품 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설치하는(안 제22조의3 신설)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4.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유의동 의원안) 국회제출 (11. 21.)

-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은 분쟁조정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안 제73조 제2항), (ii)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며(안 제73조 제3항), (iii)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안 제73조 제4항)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5.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유의동 의원안) 국회제출 (11. 21.)

-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은 분쟁조정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안 제17조 제2항), (ii)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며(안 제17조 제4항), (iii)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안 제17조 제3항 제4호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6.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유의동 의원안) 국회제출 (11. 21.)

-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은 분쟁조정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안 제24조 제3항), (ii)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며(안 제24조 제5항), (iii) 현재 2년인 조정원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3년으로 늘리고 협의회 위원의 선임 방식도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안 제24조 제6항, 제7항), (iv)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안 제24조 제7항 제4호 신설)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 같은 취지의 약관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도 발의

17.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양정숙 의원안) 국회제출 (12. 2.)

-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i)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면에 납품단가가 변동될 수 있는 주요 원자재 품목 및 가격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2항), (ii) 부당한 특약 금지사항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하고, 하도급 계약 중 부당한 특약 사항을 무효로 하며,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신설), (iii)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게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안 제16조의3 신설)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8.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송석준 의원안) 국회제출 (12. 5.)

- 국회 정무위 소속 송석준 의원은 (i)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4조의2), (ii)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으로 하며(안 제24조), (iii)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대상으로 하고, 5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안 제32조 및 제35조제1항), (iv)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간섭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경영간섭행위를 하도록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19.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백혜련 의원안) 국회제출 (12. 12.)

- 국회 정무위 소속 백혜련 의원은 2018. 1. 7. 시행된 개정 형법이 일정 경우 벌금형의 선고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는(안 제14조, 15조) 내용의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0.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김한규 의원안) 국회제출 (12. 15.)

-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안 제2조제13호 및 제12조의8 신설, 제13조제2항 삭제 등) 내용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1.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윤창현 의원안) 국회 제출 (12. 21.)

-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이를 단순히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제재수준을 과태료로 조정하는(안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1조제3항 제2호, 제43조제6항제1호의2 제6호, 제7호 신설) 내용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